

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·중재 제도안내

1. 사업개요

- 「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」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위원회를 설치,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법적대응을 지원

<관련 근거>

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(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·중재위원회의 설치)

- 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·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를 둔다.

- 위원회 구성(50) : 직능위원 21, 기술위원 29
 - * 직능위원(21) : 판사 3, 변호사 7, 변리사 5, 법학교수 4, 기술거래사 1, 유관단체 1
 - * 기술위원(29) : 기계·소재 5, 전기·전자 5, 정보통신 5, 화학 3, 바이오·의료 2, 에너지·자원 2, 지식서비스 1, 환경 1, 기업자문 4, 회계·세무 1

2. 사업내용

- 중소기업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
 - * 피해기업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을 시,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해당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하여 진행
- (조정) 분쟁 당사자간 합의 유도(재판상 화해의 효력)
- (중재)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(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)

< 민사제도 비교 >

구분	소송	조정	중재*
신청방식	일방적 소송 제기 가능	일방적 조정 신청 가능	중재합의 후 신청 가능
법률대리인	변호사 선임 필요	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	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
소요비용	인지세, 송달료, 변호사 등 * 수천만원 ~ 수억원	수수료* 외 비용지원 * 11,000원 ~ 55,000원	수수료* 외 비용지원 * 22,000원 ~ 수백만원
해결방식	법원의 판사 판결	조정부의 조정안 제시	중재부의 판정
심급방식	3심제(1~3심)	단심제	단심제
소요기간	가변적인 해결기간	조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	중재부 구성 후 5개월 이내

- *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과 별도의 중재합의가 필요하며, 중재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(소송불가)

- (비용지원) 법률대리인 선임비용, 특허심판 비용, 소송비용

지원유형	지원내용	지원금액
법률대리인 선임비용	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 (변호사) 선임비용	최대 1,000만원
특허심판 비용	조정 중 상대방이 제시한 특허심판에 대해 지원심사를 거쳐 비용지원	최대 500만원
소송비용	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,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	최대 2,000만원

3. 신청조건

- (신청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
 - 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
- (신청방법) 상시 상담(전화 혹은 방문) 후 접수(이메일 및 우편)
 - * 노준영(02-368-8768, rjs@win-win.or.kr), 김슬빛나(02-328-8769, ksbn@win-win.or.kr)
- (제출서류) 분쟁조정·중재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증빙자료 등
 - * 관련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(www.ultari.go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- 수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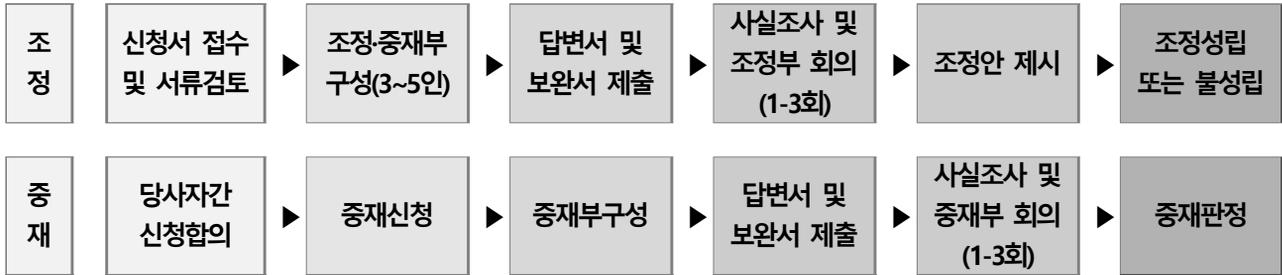
구 분	신청금액	수수료(부가세 별도)
조 정	1억원 미만	10,000원
	1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30,000원
	10억원 이상	50,000원
	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	10,000원
중 재	1천만원 미만	20,000원
	1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5,000원+신청금액×0.15%
	1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55,000원+신청금액×0.10%
	10억원 이상	555,000원+신청금액×0.05%
	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	20,000원

* 중재는 신청인이 선납부(예납)

** 수수료 감면대상: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,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, 기술 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

4. 지원절차

- (소요기간) 조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, 중재부 구성 후 5개월 이내



6. 문의처

- (담당자) 노준영 대리: 02-368-8768, rjs@win-win.or.kr
김슬빛나 사원: 02-368-8769, ksbn@win-win.or.kr

- (홈페이지) 기술보호울타리 <https://www.ultari.go.kr>
- (통합안내) 기술보호 통합 상담·신고센터 02-368-8787

궁금해요 ! 중기맨	→ 자주찾는 질문, 사업참여 노하우, Tip, 타부처 유사시책 등 소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.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☞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.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 ●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·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?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조정, 중재, 소송은 모두 민사에 해당하며, 동일사건으로 민사를 중복하여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중인 경우는 조정·중재 신청이 불가합니다. 다만, 경찰·검찰 등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경우는 조정·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. 	

특허침해 관련 우수사례(접수 '18.06.05)

- ◇ 청소용품 제작용체 A사는 제조공정 자동화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하고 직접 청소용품을 생산·판매하였으나, 2017년부터 알 수 없는 사유로 매출이 급락함
- ◇ A사는 중소기업 B사가 특허침해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·중재를 신청함
- ◇ 조정 과정에서 A사는 B사의 특허침해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, 협의를 통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폐기하고 판매된 제품은 피해보상금(2,000만원)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됨
- ◇ 조정을 통해 특허침해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짐에 따라 조정 성립 이듬해 매출이 약 2배 상승(7.6억 → 14.3억)하였으며, 사업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기존 고용인력 3명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짐

영업비밀 침해 관련 우수사례(접수 '19.10.29)

- ◇ 밸브 제조개발 전문업체인 C사는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맺고 밸브를 납품('05~'12년)하였으며, 해당 기술은 모두 특허를 등록함
- ◇ C사는 대기업의 요구로 밸브의 상세도면을 제공('10년, '15년)하였으며, 대기업은 C사에서 제공한 상세도면을 무단으로 타업체에 제공하여 납품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조정을 신청
- ◇ 조정회의(3회)에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, C사는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제품을 교체할 것을 요구
- ◇ 최종적으로 조정부에서 최소 유지관리를 위한 구매(19억6천만원) 및 신청인 특허기간 동안 추가 유지관리는 신청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고,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분쟁 해결
- ◇ 매출의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(고용인력 157명)이 조정을 통해 대기업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, 보유 특허기술과 관련된 구매 및 유지보수를 보장받음으로써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

디자인 침해 관련 우수사례(접수 '20.3.12)

- ◇ E사는 F사가 화장용 브러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·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형사 고소함
- ◇ 검찰청은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위해 수사를 중단하고, 중기부에 조정 의뢰
- ◇ 조정회의(1회)에서 E사는 해당 디자인은 축적된 연구의 결과물이므로 분쟁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추가 제조, 판매하지 않기를 요청하였으며, F사 신청인의 제품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,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품의 판매는 중단한 상황이라고 답변함
- ◇ 조정부는 분쟁제품의 전량 폐기, 추가 생산·판매 금지, 피해보상금 1천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 제시하였고,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분쟁 해결
- ◇ 검찰 수사사건 중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, 협의로 해결이 가능한 사건을 조정으로 연계받아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며,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E사의 디자인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 고용인력 45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시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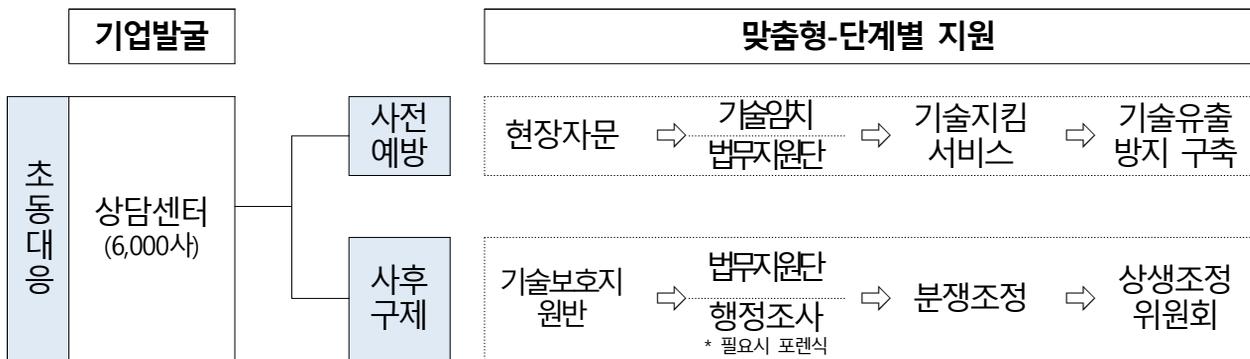
참고2

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 개요

[현행 기술보호 지원제도 체계도]

정책기반	사전예방	사후구제	인식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적기반 강화 기본계획 강화방안 등 정책 과제 수행 실태조사, 연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가 현장자문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정위원회 행정조사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안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기술보호 설명회 컨퍼런스, 포상 해외기술보호

[현행 기술보호 지원제도 흐름도]



□ 사전예방

사업명	지원내용
전문가 현장자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보호전문가(법률, 보안)가 기업을 방문하여 보안전략, 법률자문, 스마트공장, 해외진출기술보호 등 컨설팅 제공
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의 보안인프라 환경을 진단하여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
기술자료 임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유출의 발생을 대비하여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

□ 사후구제

사업명	지원내용
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분쟁 당사자 간 합의 도출을 통해 소송 보다 빠른 분쟁해결 지원
기술보호지원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기술보호책임관과 전문가가 피해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
법무지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탈취 예방·대응을 위한 전문가(변호사, 변리사)의 법률자문 및 법무지원
디지털 포렌식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유출 수단으로 의심되는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지원